- 3-7. NCS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, 능력단위를 묶어서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능력단위별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나요?
- 3-8. 교육 훈련교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?
- 3-9. 출석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하나요?
- 3-10. 내부평가 결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?
- 3-11. 학습 저조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?
- 3-12. 교육・훈련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면. 이수증은 발급하나요?

Ⅳ. 외부평가

- 4-1. 외부평가는 어디에서 시행하나요?
- 4-2. 외부평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4-3. 수험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- 4-4. 외부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?
- 4-5.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재응시 기회가 있나요?
- 4-6. 외부평가 응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- 4-7. 외부평가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나요?
- 4-8.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범위와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?
- 4-9.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채점은 누가. 어떻게 진행하나요?

V. 모니터링 관련

- 5-1. 모니터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?
- 5-2. 모니터링 기간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- 5-3.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?

VI. 자격증 발급 관련

- 6-1.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
- 6-2.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?

Ⅷ. 전산시스템

- 7-1. 과정관리시스템(LMS)란 무엇인가요?
- 7-2. LMS매뉴얼에 보면 수험원서 일괄 접수 시,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수험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, 별도 양식이 있나요?
- 7-3. 교육훈련과정 운영중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LMS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- 7-4. 외부평가를 응시하려고 하는데, 시스템(LMS, CQ-Net)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Ⅰ. 과정평가형 자격 일반 (공통)

1-1.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무엇인가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은,
 -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입니다.
-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,
 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교육·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·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·훈련기관에서,
 - 교육·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, 능력단위별 75%이상 출석한 교육·훈련생을 대상으로
 -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☆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☆

○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·기술· 소양을 산업부문별·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

1-2.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은 일-교육·훈련-자격 상호간 연계를 강화하고, 자격취득자의 현장성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 - NCS 기반의 교육·훈련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충실한 교육· 훈련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하며,
 - 교육·훈련기간 내 직무내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·훈련 및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현재 제한된 시간내 한정된 직무 내용을 평가하는 검정형 자격의 한계를 보완하고,
 -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 검정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·효율성을 제고하고, 나아가 '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'를 검증·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1-3. 기존 검정형 자격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-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무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·훈련기관에서 교육·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 - 검정형 자격이 한 번의 평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였다면, 과정평가형은 교육·훈련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
<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>

구분	검정형자격	과정평가형자격
관련근거	국가기술자격법	국가기술자격법
응시자격	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충족한 자 - 산업기사 이상 등급의 경우 응시자격 증빙	내부평가 : 능력단위별 75% 이상 출석한 자 외부평가 : 내부평가 합격자
시험면제	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	면제 없음
원서접수	해당종목의 필기·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	교육·훈련 과정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
평가방법	필기시험 : 4지 택일 실기시험 : 필답형, 작업형	내부평가 : 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 : 1차·2차
평가범위	종목별 출제기준 내	내부평가 : 모든 필수 + 선택 능력단위 외부평가 ; 필수능력단위
재 평 가	필기 합격 후 2년	최종합격자 발표후 2년 이내 재응시
모니터링	해당 없음	단위과정별 분기 1회 실시
합격기준	필기 : 60점 이상 실기 : 60점 이상	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:1의 비율로 합산, 평균 80점 이상
자격증	자격 종목, 합격일 등 취득 사항만 기재 발급	교육·훈련 기관명, 기간, 이수시간, 이수 능력단위 등 기재 발급

1-4. 이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·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이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·훈련과정에 참여가능하며,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, 등급이 같을 지라도 취득방법 및 자격증 기재내용이 다르므로 취득이 가능 합니다.
 -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종목, 등급이 같을 지라도 법령에 따른 취득기준 및 자격증 형태가 다르 므로 중복 취득할 경우에도 시행령 제24조의 이중취득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.

1-5. 누구든지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·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누구든지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·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.
 - 다만, 교육·훈련기관의 시설·장비 등 여건상 교육·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·훈련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자체 선발기준 등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1-6.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·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검정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·훈련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, 검정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- 과정평가형 자격과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취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,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.
 - 따라서,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에서 중도탈락하거나,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검정형 자격의 응시기준(산업기사, 기사/기능장/기술사에 응시할 경우 법령으로 제시된 학력 또는 경력 등)에 부합하는 경우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.

1-7. 과정평가형 자격에도 현재와 같이 시험면제가 있나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별도의 시험면제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 니다.
 - 검정형 자격은 다양한 경로(자격 취득, 교육·훈련경력, 기능 경기대회 등)에 따른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제도가 운영 되고 있으나,
 -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지정받은 교육·훈련과정별로 교육·훈련이 실시되므로, 시험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-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·훈련과정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직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것을 전제로 평가를 치르게 되며, 교육훈련과정 참여중에 취득하는 내부평가 점수가 최종 합격점수에 50% 반영되는 등 고려사항이 많아 별도의 시험 면제를 적용 어렵습니다.

1-8.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탈락한 사람은 재웅시가 가능 한가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2년 이내에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 - 다만,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(응시 대상 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)에는 동일 능력 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, 장비 활용 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 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
1-9.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은 무엇인가요?

과정평가형 자격 신청대상 종목(143개)								
			·16년(15종목)~					
산업기사 (7종 목) 기능사 (8종 목)		산업기사 (3종목)	기능사 (11종목)					
①기계설계 ②차공구설계 ③정말측정 ④기계기공조립 ⑤컴퓨터응용기공 ⑥사출금형 ⑦프레스금형		① 컴퓨터응용밀링 ② 컴퓨터응용선반 ③ 연삭 ④ 정말측정 ⑤ 기계기공조립 ⑥ 전산응용기계제도 ⑦ 공유압 ⑧ 금형		① 용접 ② 생산자동화 ③ 귀금속가공 서비스 (1종목) ① 컨벤션기획사2급	① 미용사(일반) ② 이용사 ③ 화학분석 ④ 용접 ⑤ 특수용접 ⑥ 전자가기	⑦ 전자카드 ⑧ 생산자동화 ⑨ 귀금속기공 ⑩ 천장크레인운전 ⑪ 타워크레인운전		
	'17년(3	1종목)~		,	18년(50종목)			
기사 (2종목)		기능사 (19종목)		기사 (4종목)	기능	기능사 (34종목)		
① 기계설계 ② 메카트로닉스	⑤ 콘크리 ⑥ 축량 ⑦ 조경 ⑧ 공조냉 ⑨ 웹디자 ⑩ 컴퓨터 ⑪ 열차리	보수도장 (4) 제빵 체정비 (1) 한식조리 용토목제도 (6) 양식조리 트 (7) 조주 (8) 축산 (9) 전자계산 동기계	İ	① 용접 ② 의류 ③ 조경	① 금속도장 ② 도자가공예 ③ 양장 ④ 한복 ⑤ 연색(날염) ⑥ 연색(날염) ⑥ 반반 ⑥ 안선(물) 가당자(장비) ⑥ 한당전(자당자(장비) ⑥ 하당전(자당자(장비) ⑥ 자동(자당자(장비) ⑥ 대한 제신(대) ⑥ 대한 대한 대신(대) ⑥ 대한	비 29 승강기 보리 39 농가계정비 39 종자 39 원예		
산업기사 (9종	등목)	서비스 (1종목)		산업기사 (10종목)	서비스 (2종목)			
① 공조냉동기계 ② 실내건축 ③ 시각디자인 ④ 컬러리스트 ⑤ 금속재료 ⑥ 기계정비 ⑦ 위험물 ⑧ 농업기계 ⑨ 정보처리		①텔레마케팅관리사		① 패션디자인 ② 표면처리 ③ 주조 ④ 조경 ⑤ 전자 ⑥ 식품 ⑦ 패션머천다이징 ⑧ 조리 (양식) ⑨ 조리 (중식) ⑩ 승강기	① 전산호계운용사 3급 ② 직업상담사 2급			
'19년(32종목)~								
기사 (3종목) 산업기사 (15종목)		기능사 (12종목)		서비스(2종목)				
① 화공 ② 컬러리스트 ③ 식육가공	① 지적 ② 건축목 ③ 자동차 ④ 항공 ⑤ 에너지 ⑥ 제품다 ⑦ 사무자 ⑧ 잠수	정비 (1) 수 <u>약</u> 명 (1) 악공 랜 (1) 조리(한 전(1) 연 조리(알	식) 식)	② 항공장비정비 8 ③ 에너지관리 9 ④ 사진 (0) ⑤ 수산양식 (1)) 환경) 유기농업) 의료전자) 위험물) 산림 수질환경) 3D피민터운용	① 전산회계운용사 2급 ② 시회조사분석사2급		

[※]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에 대한 세부 정보는 CQ-Net홈페이지(c.q-net.or.kr)에서 확인

Ⅱ.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관련

2-1.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·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?

-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하여 NCS를 기반으로 편성된 교육· 훈련과정은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가 가능합니다.
 -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 가능 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.

<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대상 기관 >

- 1.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・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
- 2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- 3.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- 4.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
- 5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
- 6. 「평생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- 다만,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·훈련과정으로 지정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2-2. 교육·훈련과정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

- 교육·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교육·훈련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에 "교육·훈련과정 지정 신청서" 및 제반 서류를 CO-Net을 통해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된 신청서 내용에 대해 종목별 전문가 집단에서 구성된 지정평가 지원단에서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를 실시하며,
 - 서류심사 결과 통과된 과정을 대상으로 신청 내용 및 시설·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.
 - * 지원단은 교육·훈련기관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
-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는 종목별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,
 -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정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공고하게 됩니다.

- 2-3. 과정평가형자격의 종목별 교육·훈련과정 편성기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은 다른가요?
- 과정평가형자격의 종목별 교육·훈련과정 편성기준은 해당 종 목의 직무내용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부합하는 NCS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,
 -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은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 직종별로 제시하는 교육·훈련의 기준입니다.
 - 따라서, 훈련기준의 내용이 편성기준의 내용과 유사할 수 있으나,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·훈련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편성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
2-4. 교육·훈련과정 신청 시 해당 시설·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지정신청 시 해당 시설·장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교육 · 훈련과정으로 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.
 - 과정평가형자격 종목별 편성기준에 따른 교육훈련 시설·장비는 교육・훈련과정 편성을 위한 필수기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보유 하여야 하며,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훈련과정 지정이 불가합니다.
- 다만, 부족한 시설·장비에 대한 명확한 구매계획이 있을 경우 에는 구매계획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아울러, 과정 지정 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2-5. 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에서도 산업기사 등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·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마이스터고 등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서 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교육·훈련과정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
 - 과정평가형 자격은 한 번의 평가결과에 따른 검정형과 달리 정해진 교육·훈련기간 내에 NCS 기반의 교육·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등을 통해 충실하게 교육·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 - 따라서,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할 충분한 여건을 갖춘 교육·훈련기관이라면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사 등급의 교육·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-6. 전문대학에서 기능사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·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전문대학에서도 기능사 등급에 해당하는 교육·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·훈련과정을 개편하고, 시설 장비 등 필수기준과 세부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, 전문대학 에서도 기능사 과정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2-7. 과정 지정 신청시 제출된 교육·훈련과정의 세부 내용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?

- 자격종목 및 법령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 등 필수적인 요건을 제외하고, 교육훈련 일정, 장소, 교수자 활용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 합니다.
 -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,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, 변경요청 내역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변경 ·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- 또한, 편성시간 조정 등 당초 지정받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,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·운영할 수 있습니다.

2-8. 교육·훈련생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동시에 여러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?

- 교육·훈련생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·훈련 과정을 신청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 - 하지만, 각각의 과정별로 정해진 최소 교육·훈련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· 훈련과정 편성 내용을 참조하여 과정 미이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

- 2-9. 교육·훈련과정을 한번 지정받으면 동일한 교육·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 과정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?
- '18년 지정 과정부터 심사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,
 - 전부 면제의 경우 우수운영과정 경진대회*의 성과 평가와 일정 기준을 토대로 '18년도 동일 과정 신청시 과정심사 전부(서류심사 및 현장심사) 면제가 되며 (단. 편성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 될 시. 필수항목 등 심사)
 - 기존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기관으로 '18년도 과정운영 신청 기준이 동일한 경우 현장심사를 면제하는 일부면제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.
 - 이는 편성기준 및 능력단위 변동, 조정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.
 - * 평가 주요항목: 이수율, 자격취득율, 취업률 결과, 교육훈련과정운영, 내부 평가 운영. 교육훈련생 관리 등
 - 2-10. 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하기 위한 교육 시수 일부 변경이 가능한가요?
-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등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위해 편성기준(15배수)와 교육 시수(17배수)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교육시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
2-11. 능력단위가 중복되는 유사자격(NCS기반 자격) 과정을 단일과정에서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?

- '18년 지정 과정부터 능력단위의 일부가 중복 되는 유사자격 (NCS기반 자격)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, 단일 과정에서 유사종목 중복 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며,
 - 이를 통해 중복된 능력단위 교육시간을 인정하여 단시간 내에 2개 이상의 자격취득 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.
 - 다만 이 경우 동일 기관에서 2종목 이상 운영시 능력단위가 중복되더라도 개별 종목별 기준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.

A 자격 편성시간	B 자격 편성시간	중복능력단위
■ 600시간	■ 600시간	■ 200~400시간 단축

〈예시: 용접기능사 및 특수용접기능사〉

구분	용접기능사		특수용접기능사		중복
	능력단위	시간	능력단위	시간	8 =
필수능력단위	11개	435	11개	420	5개 180시간
선택능력단위	7개	345	8개	390	4개 195시간

※ 단 통합심사를 통한 비용지원을 받는 기관은 제외됩니다.

2-12. 타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설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?

- NCS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타 교육기관 및 기업체,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능력단위 설계 가능하며, 도제학교 등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능력단위는 관련된 거점학교 훈련시설장비도 참여 학교 보유로 인정됩니다.
 - 또한 고등학교 단계의 자격에서 특성화고 및 대학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고가의 기자재*가 필요한 경우,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교육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합니다.
 - * 컴퓨터응용가공의 필수능력단위인 3차원 측정은 고가의 3차원 측정기 필요
- ※ 단 통합심사를 통한 비용지원을 받는 기관은 제외됩니다.

2-13.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교육·훈련과정을 부정하게 지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이에 따른 조치는?

○ 모니터링 중 교육·훈련과정을 부정하게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그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며, 주무부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
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5 [지정교육·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]

-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·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·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·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교육·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·훈련을 실시한 경우
 - 4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·훈련생의 교육·훈련 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

Ⅲ. 교육·훈련과정 운영 및 내부평가 관련

3-1. 교육·훈련과정 중 내부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?

-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로 교육훈련이 종료 된 시점에서 실시 하게 되며, 교육·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지정 교육·훈련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해당기관에서 직접 실시합니다.
 - 내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, 공단 관할지부지사에 내부평가 실시 계획을 사전 통보하고, 실시 후에는 종료 15일 이내에 결과를 공단 지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-2. 내부평가 과제의 출제·평가는 누가 하나요?

- 내부평가의 과제 출제 및 평가는 해당 교육·훈련기관의 장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.
 - 교육·훈련기관의 장은 필수/선택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·훈련이 종료될 때마다,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 - 이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 및 평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, 종목별 지원단의 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3-3. 내부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?

-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교육·훈련 종료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.
 -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, 교육기관 형편에 따라, 능력단위를 묶어서(교과목 중심평가 등) 시행하거나, 분할(중간/기말 고사 등)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,
 - 다만, 내부평가에 대한 결과(100점 만점 기준)는 각각의 능력단위 별로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며, 매 평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정관리시스템(LMS)에 제출되어야 합니다.
- ※ [HRD-net-행정지원시스템(www.hrd.go.kr:8081)-과정평가형자격]을 통해 과정관리시스템(LMS)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

3-4. 현장훈련(OJT) 편성은 가능한가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에도 현장훈련(OJT)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과정운영 시간중 일정 시간(각 능력단위별 25%이내)에 한해 현장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 - 단 통합심사를 신청해 비용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의 경우 현장 훈련 편성이 불가능합니다.
- ❖ 교육현련과정 편성시 현장훈련(OJT)은 능력단위별 25%범위내 편성 가능(단, 비용과 관련된 직업훈련시설기관은 제외)

3-5. 개인 사정으로 내부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직계가족의 경조사, 본인 질병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부평가에 불참한 응시자가 있는 경우, 교육훈련 기관에서 필요 시,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.
 - 단, 추가 실시에 대해서는 적정 사유와 함께 실시일정, 참여 대상, 평가방법, 공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 지부지사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3-6. 내부평가의 점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내부평가의 점수는 교육·훈련을 실시한 능력단위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.
 - 평가는 "교육·훈련과정 개인별 평가표"에 평가하고, 평가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특정 능력단위에서 낮은 점수(해당 기관에서 자체 판단)를 획득한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가 가능하며, 이 경우 재평가된 점수를 최종 점수로 반영하게 됩니다.

- 3-7. NCS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, 능력단위를 묶어서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능력단위별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나요?
-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.
 - 예를 들어, 능력단위 1, 2, 3이 하나의 교과목 A로 편성되었다면
 - 교육·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A를 평가할 때, 능력단위 1,2,3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과제를 구성해야 하며, 각 평가결과를 토대로 능력단위 1,2,3의 평가결과를 평가표에 작 성해야 합니다.
 - 또한, 교과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화산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

3-8. 교육·훈련교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?

○ NCS 능력단위별 교육·훈련교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(www.krivet.re.kr) 에서 학습모듈로 개발하여 NCS홈페이지(www.ncs.go.kr)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.

3-9. 출석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하나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의 능력단위별 출석 및 참석시가 등에 대해 서는 과정관리시스템(LMS)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
- 출석에 관련된 자료는 훈련생의 교육·훈련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며, 교육·훈련기관의 장은 능력단위별로 개인별 교육·훈련생의 참여도(출석)를 기록하여 관리·보관 해야 합니다.
 - 그러나, 과정평가형 자격을 위한 별도 출석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, 공단에서 추후 모니터링 시 과정관리시스템(LMS) 등록 사항을 기반으로 교육훈련기관 자체 출석자료를 비교하여 확인 하게 됩니다.
- 출석 인정 범위는 통상적으로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학사 규정을 준용하고, 훈련기관의 경우 능력개발법 기준을 적용 하면 됩니다.

3-10. 내부평가 결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?

- 지정 교육·훈련과정 운영기관의 내부평가 결과는 교육·훈련과정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.
 - 교육·훈련기관의 장은 내부평가가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정관리시스템(LMS)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.
 - 평가결과물은 전자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, 작품에 대해 서는 합격자 발표일 1개월 후 폐기해도 됩니다.

3-11. 학습 저조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?

- 교육·훈련기관의 장은 학습 저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·훈련과정 중 별도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정 지정 신청시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3-12. 교육·훈련과정의 이수기준을 충족하면, 이수증을 발급하나요?

○ 발급하지 않습니다. 우리 공단에서는 해당 교육·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등 제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
Ⅳ. 외부평가

4-1. 외부평가는 어디에서 시행하나요?

-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종목별 지원단 중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외부평가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·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 행합니다.
 - ※ 종목별 지원단은 이외에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·훈련과정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4-2. 외부평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?

- 과정평가형자격 지정 교육·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·훈련생 중 외부평가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.
 - 해당 교육·훈련과정 중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하고, 능력단 위별 출석율 75% 이상을 모두 이수한 교육·훈련생에 한해 외부평가 참여가 가능합니다.
 - ※ 외부평가에 참여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외부평가 실시전 반드시 모든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훈련을 끝마쳐야 함.
 - ※ 외부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·외부평가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. 내부평가 점수는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

4-3. 수험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참여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·훈련생은 최초 교육·훈련과정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부지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.
 - 개인별로 한국고용정보원 Hrd-net에 가입 후 원서접수 가능
- 별도로, 외부평가 응시를 위해서는, 교육·훈련기관의 장이 외부 평가 최종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외부평가일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, 공단에서는 제출된 명단을 확인하여 최종 응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.

4-4. 외부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?

-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는 정기 6회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
 - 각 외부평가는 모든 교육·훈련과정 종료 후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지정된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 - 따라서, 교육·훈련기관의 장은 외부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· 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.
 - * 세부 평가일정은 CQ-Net 공지사항 참조

4-5.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재응시 기회가 있나요?

- 지정 교육·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.
 - 이는 장기간의 교육·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에도 외부 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한 훈련생에 대해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됨

4-6. 외부평가 응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과정평가형 자격의 지정 교육·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· 훈련생의 경우, 해당 교육・훈련과정의 자격 취득을 위해 외부 평가에 응시할 때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는 없습니다.

4-7. 외부평가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나요?

- 외부평가는 전국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.
 - 외부평가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과 평가의 형평성 및 효율 성을 고려하여, 동일한 평가문제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,
 - 시험일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시행계획 공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

4-8.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범위와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?

- 외부평가의 시험문제는 해당 종목별 편성기준에 제시된 NCS의 필수능력단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.
 - 선택 능력단위는 교육·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달리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수 능력단위만을 출제범위로 설정 합니다.
- 외부평가 시험 문제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 될 수 있습니다.
 - 문제해결형, 서술형, 논술형, 단답형, 도면제작, 작품제작, 작업 수행평가, 면접,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 중 해당 자격종목의 능력단위 평가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.
 - 시험문제는 종목별 지원단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될 예정입니다.
- 외부평가 종목별 시험문제 유형은 CQ-Net홈페이지(c.q-net..or.kr)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

4-9.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채점은 누가, 어떻게 진행하나요?

○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육·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목별 교육· 훈련과정 출제 지원단에서 채점기준에 따라 엄정ㆍ공정하게 채점합니다.

V . 모니터링(Monitoring)

5-1. 모니터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교육·훈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교육·훈련과정 질 관리의 핵심사항으로, 지정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 ·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.
 - 모니터링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-- < 모니터링의 범위(시행규칙 제11조의6) >

- ① 지정 교육.훈련과정 운영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
- ② 교육·훈련생 출석관리
- ③ 교육·훈련기관 내부평가의 적정성
- ④ 실험·실습 시설 및 장비의 보유 및 활용 여부

5-2. 모니터링 기간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
- 모니터링은 교육·훈련과정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교육· 훈련과정 종료일까지를 모니터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,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며, 교육·훈련기관의 내부평가일에 맞춰 실시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민원제기 및 사건·사고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시 모니터링 횟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
5-3.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?

-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달리 처리됩니다.
 -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단에서 현지 지도를 통해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 - 교육·훈련과정 운영이 지정된 내용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주무부처에 통보하며, 해당 기관은 "시정명령"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경우 일정 기간 내 조치사항을 주무부처로 알려주어야 합니다.
 - 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·훈련과정을 지정받거나, 교육 · 훈련생 내부평가를 실시한 경우 및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소관 주무부처에 통보하게 되며, 주무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교육·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Ⅵ. 자격증 발급

6-1.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

○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발급·재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합니다.





- * 자격증 발급 서식 참조
-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종합격자가 CQ-Net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.
 - 인력공단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작·발급하게 됩니다.
-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,인력공단으로 자격증 재교부를 요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
6-2.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?

○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수수료는 현행 검정형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동일합니다.

(인터넷 발급 3,100원), 배송료 별도

Ⅷ. 전산시스템

7-1. 과정관리시스템(LMS)란 무엇인가요?

-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, 수험자 접수 및 학습일지 관리(이수 시간 관리), 내부평가 관리, 외부평가 대상자(이수자) 결정 등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운영 관리에 활용하는 시스템 입니다.
- 7-2. LMS매뉴얼에 보면 수험원서 일괄 접수 시,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수험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, 별도 양식이 있나요?
- 개인정보 활용 동의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, 기관 자체 양식으로 서명 받아서 별도 보관하시면 됩니다.

7-3. 교육훈련과정 운영중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LMS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
- 교육훈련생이 변경된 경우에는 LMS시스템 → 과정평가형 → 실시관리 → 교육훈련생변경 → 변경신고에서 변경 처리하시면 됩니다.
 - 다만, 확정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훈련생 추가만 가능하며, 삭제는 불가합니다.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학습관리 → 교육훈련생상태변경 → 상태변경(중도탈락)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.

7-4. 외부평가를 응시하려고 하는데, 시스템(LMS, CQ-Net)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외부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일정별로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 - <1. 응시회차 신청> 응시회차 신청은 시행일 약 한달 전 까지, LM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 - * 시스템: LMS-> 과정평가형-> 외부평가관라-> 외부평가대상 신고-> 세부내역
 - <2. 종합결과신고> 종합결과 신고는 과정별로 모든 능력단 위의 내부평가 종료 후, 득점 현황, 이수자 현황 등을 포함한 종합 현황을 외부평가 시행 15일전까지 교육훈련 종료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 - * 시스템: LMS-> 과정평가형-> 내부평가관리-> 종합결과신고
 - <3. 인터넷 접수> 마지막으로 c.q-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평가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
 - * 시스템: c.q-net.or.kr-> 과정평가형자격-> 외부평가 원서접수-> 원서접수
- ※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시행 회차별 세부일정은 c.q-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초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인력풀 공개모집

□ 모집분야

- 과정평가형 자격 **'19년 운영과정 지정심사**(서류심사, 현장심사) 및 외부평가, 모니터링 위원, 편성기준개발 등 참여
- 대상종목 : 국가기술자격 중 총 143개 종목(신규종목 32개 종목)

년도	구분	직 종 현 황				
'15년	산업기사	①기계설계 ②치공구설계 ③정밀측정 ④기계가공조립 ⑤컴퓨터응용기공 ⑥사출금형 ⑦프레스금형				
(15종목)	기능사	①컴퓨터응용밀링 ②컴퓨터응용선반 ③연삭 ④정밀측정 ⑤기계가공조립 ⑥전산응용기계제도 ⑦공유압 ⑧금형				
'16년	산업기사	① 용접 ② 생산자동화 ③ 귀금속가공 서비스 ① 컨벤션기획				
(15종목)	기능사			가분석 ④ 용접 ⑤ 특수용접 ⑥ 전자기기 금속가공 ⑩ 천장크레인운전 ⑪ 타워크레인운전		
	기사	① 기계설계 ② 메카트로닉스	산업기사	① 공조냉동기계 ② 실내건축 ③ 시각디자인 ④ 컬러리스트 ⑤ 금속재료 ⑥ 기계정비 ⑦ 위험물		
'17년	서비스	① 텔레마케팅관리사		⑧ 농업기계 ⑨ 정보처리		
(31종목)	기능사	⑤ 콘크리트 ⑥ 측량 ⑦				
	기사	① 조경② 용접 ③ 의류		① 조경 ② 전자 ③ 패션머천다이징 ④ 주조		
	서비스	① 전산회계운용사 3급 ② 직업상담사 2급	산업기사	③ 패션디자인 ⑥ 표면처리 ⑦ 양식조리 ⑧ 중식조리 ⑨ 식품 ⑩ 승강기		
(18년 (50종목) 기능사 의 금속도장 및 도자기 원 압연 및 축로 ② 배 의 정보처리 ② 정보기			공기관정비 ③ 항공전자정비 ④ 자동차차체수리 속재료시험 ⑧ 표면처리 ⑨ 제품응용모델링 ⑩ 신발류제조 공예 ③ 양장 ④ 주조 ⑤ 한복 ⑥ 염색(침염) ① 염색(날염) 발 ② 미용사(네일) ② 미용사(메이크업) ② 미용사(피부) 기운용 셸 전자출판 ② 화훼장식 셸 중식조리 ② 복어조리 공 ② 승강기 ③ 농기계정비 셸 종자 ⑤ 원예			
'19년 (32종목)	기사	① 화공 ② 컬러리스트 ③ 식육가공	산업기사		① 지적 ② 건축목공 ③ 자동차정비 ④ 항공 ⑤ 에너지관리 ⑥ 제품디자인	
	서비스	① 전산회계운용사 2급 ② 사회조사분석사 2급		⑦ 사무자동화 ⑧ 잠수 ⑨ 자연생태복원 ⑩ 식물보호 ⑪ 수질환경 ⑫ 의공 ⑬ 조리 (한식) ⑭ 조리(일식) ⑮ 조리(복어)		
	기능사	① 건설재료시험 ② 항 ⑥ 잠수 ⑦ 환경 ⑧ 유 ② 3D프린터운용				

□ 모집공고

O **공고방법:** CQ-Net, Q-Net, 공단홈페이지, HRD-Net 모집공고 등재

- 모집기간 : '18. 9. 3(월) ~ 9. 21(금)

- 모집인원 : 제한 없음

□ 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(https://c.q-net.or.kr)
 - 개인회원 가입 후 인력품등재 신청 메뉴에서 관련서류 등재 및 신청
 -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 심사기준에 적합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승인
 - * 필수서류: 4대 보험가입증명서, 경력 및 재직증명서(담당업무 구체적 기록)
 - 처리기한 :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
 - * 홈페이지(https://c.q-net.or.kr) **마이페이지**에서 신청결과 조회 가능
 - * 위촉확인서 발급 가능

□ 과정평가형 자격 심사 기준

구 분	심 사 기 준
산업현장 전문가	- 해당분야 기술사,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재직자 - 해당분야 국가지격/기술사, 기능장 제외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재직자 -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(새로운 산업분야 등) -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중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
교육 -훈련 전문가	- 해당 분야 석·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교육·훈련 경력이 있는 재직자 - 해당 분야 교육기관에 교사(전임강사)로 5년 이상 종사한 재직자 - 해당 분야 훈련기관에 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재직자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(새로운 산업분야 등)

- * 해당 분야 석·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재직자의 경우. 해당 학교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의 경력 입증이 가능하다면 시간제 및 계약직 강사의 강의 경력도 인정
- ** 인력풀 등재 신청자가 위 심사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, 승인 및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으로 위촉 활용
- ***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위촉배제자는 신청 불가

